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에서 규정한 자활기업의 보고 의무, 인정요건 미충족시 시정명령,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과태료 제도의 도입 (제43조)

자활기업의 보고 의무, 인정요건 미충족시 시정명령 위반,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에 대한 위반시 과태료 액수를 별지와 같이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과태료)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0조의2 제1항 제1호	100	200	300

작성하여 제출한 자				
법 제18조의3제2 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법 제50조의2 제1항 제2호	100	200	300
법 제18조의3제 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50조의2 제1항 제3호	100	200	300
법 제18조의5를 위반하여 자활기 업 또는 이와 유 사한 명칭을 사용 한 자	법 제50조의2 제1항 제4호	100	200	300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3조(과태료) 법 제50조의2제2</u> <u>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u> <u>별표 1과 같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연 락 처	(044) 202 - 3077